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1-11호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아산시의회 의장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김영애 의원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조미경 의원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준 의원 심상복 의원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영 의원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의상 의원 심상복 의원 김수영 의원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1년 8월 18일(수)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pys9799@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